#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단축하며, 200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읍·면에 있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여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소득세할 주민세의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함.(안 제22조의2제3항)

나. 읍면에서 운영하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2항).

다.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8조제2항)

##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성주군조례 제 호

#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3항중 "그 다음달 말일"을 "그 다음달 15일"로 한다.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중 "읍·면"을 각각 "군"으로 한다.

제98조 제2항중 "7월 10일"을 "7월 31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②(생 략)<br>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br>④~⑤(생 략) |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②(현행과 같음)<br>③----------<br>---------- **그 다음달 15일**----------<br>----------.<br>④~⑤(현행과 같음) |
|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둔다.<br>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 인에 대하여는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br>③~④(생 략) |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br>----------**군**----------.<br>②----------**군**----------.<br>③~④(현행과 같음) |
| 제98조(납기) ①(생 략)<br>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제98조(납기) ①(현행과 같음)<br>②----------**7월 31일**----------. |